

피고인 최후 변론서

사 건 : 2019고합 4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 우종창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한 최후 변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에서 방송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작성한 방송녹취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먼저 말

씀드리지만, 사실로써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어
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중략).

그래서 제가 (?)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보자의 주장이고 아직 제가 사실
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
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초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최
서원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하 생략)」.

나.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발언의 취지는 “① 제보를 받
았다는 것, ②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③ 그 자리에는 얼굴이 알려
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동석했다는 것, ④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초 사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하는 내용입니
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보 받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여, 시청자들
에게 소개만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난 게 사실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 이어지는 방송 내용도 피고인이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청

와대 대변인 김의겸에게 사실여부를 의뢰하는 질문지를 보냈다는 것,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 방송을 하기 전인 2018년 3월 1일 오후 6시 전까지 답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후 7시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 한식집에서 서빙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 위해, 해당 동영상의 제목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세윤 판사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 증거는 기록 속에 있다/「거짓과 진실」 행동 지침 공개”입니다. 피고인이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제목을 이처럼 밋밋하게 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 통상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은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회 수가 늘어나며, 조회 수가 많을수록 인기 있는 유튜브 방송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그런 내용의 제보도 있구나”하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조·중·동과 같은 기성 언론이나 종편 및 유튜브 등 어느 매체에서도 피고인의 동영상 내용을 인용,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내용이 제보자체를 소개하는데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3.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서 기자로 근무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시작되던 2016년 10월경에는 「조갑제 닷컴」의 객원기자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조서를 변호인들을 통해 입수하는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TV조선 이진동 기자,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 등이 쓴 책과 피고인의 직접 취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를 「조갑제 닷컴」에 기사화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7. 10. 2.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주제로 1인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의 고소인인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2017. 5.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17. 7. 14.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300건의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 이어 2017. 10. 12.에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조작한 문서들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10. 13. 김세윤 판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

습니다.

바. 추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2017. 3. 30.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이 그 범죄혐의에 대해 입건을 하고 수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었습시다. 한 개의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누락된, 단 한 개의 범죄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영장 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 그런데 최강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2017. 10. 13. 「정봉주의 전국구」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이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 2/박근혜 구속영장 재 발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 증거로 제출).

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월말 경, 어느 시청자로부터 조국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가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 피고인은 조선일보에서 23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면서, 기자의 사명은 정론직필(正論直筆)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 다시 말해 제보자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소개만 했을 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카. 피고인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그리고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타.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방송하기 전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조국 민정수석과 부산해광고 동문이고, 박종철 군을 최초로 검안한 중앙대병원 의사 오연상을 최초로 인터뷰하고 보도한 기자가 피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4. 조국 민정수석은 동영상 보도 후 1년 동안 삭제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019. 2. 14. 이전에 피고인에게 해당 동영상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해당 동영상이 방송되고 거의 1년

이 지난 무렵에 느닷없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나. 고소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수장이며, 주 업무는 대한민국의 민심 파악입니다. 그러한 막강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조국 민정수석은 본인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는 사안에 대해 1년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김세윤 판사도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구민경 판사)를 통해 보낸 취재협조문을 받아 보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정이나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이란 주제로 동영상을 방송하면서, 방송에 거론된 당사자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권을 요구하거나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했습니다.

마. 피고인은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삭제할 때, 그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해 왔습니다. 2018. 12. 27.에 방송된 동영상 제161편의 제목은 “알립니다. 동영상 제159편 삭제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영상 제159편에 대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근거로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하였던 것입니다.

바.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보도나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였더라

면 피고인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그 요구에 응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더 이상의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시점은 2018. 3. 2. 오전 6시이며, 피고인이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취재협조문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에게 보낸 시점은 유튜브에 공개되기 전날인 2018. 3. 1. 11:37이었습니다.

나.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취재협조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유튜브 촬영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피고인은 취재협조문을 보낼 때, 방송제작 시간을 고려하여 같은 날 18:00까지 답신을 요구하였으나, 김의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2018. 3. 1. 19:36분입니다.

다. 해당 동영상은 39분54초짜리로, 촬영하는데 평균 2시간이 소요되며, 촬영이 끝난 후엔 썸네일(동영상 제목)을 붙이고 음질과 화질을 조정한 후 인코딩을 하는데 적어도 4시간 이상이 걸리며, 완성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립니다. 촬영에서 업로드까지 적어도 7시간이 소요되는데 통신망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 피고인은 동영상 제작이 끝난 후, 김의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남 전화 문자 등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누군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 헛소문은 찌라시에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질문이니 제 나름대로 진지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문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러나 피고인이 김의겸에게 보낸 취재협조문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62~63.). 그래서 피고인은 김의겸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대변인 선에서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 그래서 피고인은 김의겸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답변 내용을 믿기가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이 내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므로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의겸은 “민정수석의 전화번호는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의겸에게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김의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 조국 민정수석도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방송을 하기 전에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알지 못 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계속해서 “증인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김의겸 대변인으로

부터 피고인이 취재협조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인이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다시 김의겸 대변인에게 그런 질문지를 받았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라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조국 민정수석의 증언을 종합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김의겸으로부터 취재협조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김의겸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피고인이 보낸 취재협조문을 보고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피고인은 사실여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동영상이 공개되고 4일이 지난 2018. 3. 5. 11:54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에게 취재협조문을 팩스로 보내면서 김세윤 판사의 의견을 문의한바 있습니다.

차. 피고인은 김세윤 판사에게 보낸 취재협조문에서 조국 민정수석과의 관계를 질문한 뒤, 제7항에 최강욱 변호사의 이름을 등장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이 질문에서 “김세윤 재판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최강욱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으나 김세윤 판사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카.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에서 발언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공적 인물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제보 받은 내용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즉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을 소개하는 방

송을 했던 것입니다.

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요동치게 만든 수많은 대형 게이트 사건은 거의가 조그만 의혹 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문」을 열리게 했고, 우리 사회를 점점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그 험난한 길을 찾아가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송마저 못하게 하고, 형법상의 범죄로 다스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큰 경우라 할 것입니다.

파. 우리 헌법은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언론·출판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까.

4. 결론

피고인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했을 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최후 진술서, 그리고 최후 변론서 등 수많은 기록을 읽어주신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

끝으로 2020. 6. 10.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 최후 진술서」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 같아서 첨부자료로 다시 제출합니다. (끝)

첨 부 자 료

1. 피고인 최후 진술서

1부

2020. 6. 22.

피고인 우종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